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. 4. 20 선고 2020가단224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20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. 10. 2. 접수 제91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강지성

별지